

광주 2순환로 혈세낭비 끝나나

광주시 행정심판 이겨...민간사업자 협약 해지·매입 추진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제2순환도로 1구간을 광주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매입,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련기사 3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광주시가 ‘사업자의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을 내린 데 대해 사업자가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에 ‘감독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당시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 출자자인 주주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고 스스로

의 재무상태는 악화시켰다’며 ‘공공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자의 자본구조를 지난해 12월12일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감독명령을 내렸었다. 광주시는 또 ‘자본구조 변경으로 인해 출자가 겹 대주주에게 돌아간 이익이 도로시설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도 요구했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날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 대해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은 감독권 차원에서 인정돼야 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개월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시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특히, 서울과 대구, 부산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로와 터널 등을 건설했다가 눈덩이처럼 불

■광주 제2순환도로 개념도



어나는 적자보전금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에게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민간사업자 측이 자본구조의 원상회복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한 뒤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행정심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광주시의 실시협약 중도해지 통보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앞으로도 법정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간사업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오면 철저히 대비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콘크리트사업이 1997~2000년 1816억원을 들여 완공했으며 개통 3년 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다. 이후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익보장으로 지난 11년간 1190원의 예산을 보전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잠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